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

지난 3월 11일 통상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5. 8.4., 법률 제4665호, 1995.11.22, 대통령 제14805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규정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음은 이번 개정된 내용중 주요골자를 간추려 게재한 것이다.

## 시공자의 자격·기술인력·시설·장비 및 공사범위

### 제14조[시공자의 자격 등]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자격·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이에따른 공사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제16조[시공관리자의 배치 및 자격기준]

① 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시공관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별표 4] 시공자의 자격·기술인력·시설·장비 및 공사범위

종별	시공자의 자격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사범위
제1종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오른쪽란에 규정한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기사1급 이상·고압가스 기계기능사 1급 이상 또는 고압가스 화학 기능사1급 이상의 기술자 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에 있는 자 1인 이상.</li> <li>- 가스기사2급 이상·고압가스 화학기능사2급 이상·토목기사 1급 이상 또는 용접기사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li> <li>- 용접기능사2급 또는 배관기능사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2인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압시험설비</li> <li>- 자기압력기록계</li> <li>- 가스누출검지기</li> <li>-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li> <li>- 볼트 및 암페어메타</li> <li>- 회전축정기</li> <li>- 절연저항축정기(500V 1천MΩ) 그밖에 축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축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축정기 등)</li> <li>- 기밀시험설비</li> <li>- 분동식표준압력계</li> <li>- 각종 압력계</li> <li>- 표준이 되는 온도계</li> </ul>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제2종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 공사중 설비공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오른쪽란에 규정한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기사1급 이상·고압가스 기계기능사 1급 이상 또는 고압가스 화학 기능사1급 이상의 기술자 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에 있는 자 1인 이상.</li> <li>- 가스기사2급 이상·고압가스 화학기능사2급 이상·토목기사 1급 이상 또는 용접기사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li> <li>- 용접기능사2급 또는 배관기능사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2인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압시험설비</li> <li>- 자기압력기록계</li> <li>- 가스누출검지기</li> <li>-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li> <li>- 볼트 및 암페어메타</li> <li>- 회전축정기</li> <li>- 절연저항축정기(500V 1천MΩ) 그밖에 축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축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축정기 등)</li> <li>- 기밀시험설비</li> <li>- 분동식표준압력계</li> <li>- 각종 압력계</li> <li>- 표준이 되는 온도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공급 시설을 제외한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li> <li>-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li> </ul>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

종별	시공자의 자격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사범위
제3종	도시가스사업자로서 오른쪽란에 규정한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자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서 가스기사1급 이상·고압가스기계기능사1급 이상 또는 고압가스화학기능사1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가스기사2급 이상·고압가스기계기능사2급 이상 - 고압가스화학기능사2급 이상·토목기사1급 이상 또는 용접기사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용접기능사2급 또는 배관기능사2급 이상의 기술 자격소지자 1인 이상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식식마스크 - 볼트 및 압페어메타 - 회전측정기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MΩ) 그밖에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 기밀시험설비 - 분동식표준압력계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종별	시공자의 자격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사범위
제4종	오른쪽란에 규정한 기술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자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이지만,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는 제외한다) 또는 공사가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은 자 1인 이상으로 공사가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인 이상	- 기밀시험기록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도급의 경우에는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에 의한다. 1.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배관에 고정 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3.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제5종	오른쪽란에 규정한 기술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자 또는 동시·시설·장비를 갖추고 기술인력을 채용한 자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 제1종 내지 제3종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공사가 통상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인 이상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도시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다만, 도급의 경우에는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에 한한다.
※ 비고 1. 시공자별 구분란중 상단의 시공자는 하단 시공자의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다. 2. 가스사용시설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1. 시공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가스기사2급 이상·고압가스기계기능사1급 이상 또는 고압가스화학기능사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2. 시공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7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공사에 있어서는 고압가스기계기능사2급 이상·고압가스화학기능사2급 이상 또는 고압가스취급기능사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3. 시공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700만원 이하

인 공사에 있어서는 고압가스취급기능사2급 이상 또는 공사에서 실시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1)에 규정된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라 한다) 1인 이상. 다만, 도시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

자재 제1종 내지 제3종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 시공업의 기술요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9별표 14)에 규정된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인의 시공관리자가 2개의 공사현장을 시공 관리할 수 있다.

1. 1건의 공사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로서 2개의 공사현장의 직선거리가 4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공사가 행하여지는 경우

2. 동일 사업장안에서 동일 시공자가 행하는 공사의 경우

③ 공사현장에 배치된 시공관리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공사현장을 벗어나거나 시공 관리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의 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의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열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공사와 그 변경공사[월사용예정량을 500세제곱미터 이상 중대시키거나 배관의 호칭지름(이하 “관경”이라 한다)이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변경공사에 한한다]로 한다.

1.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월사용예정량이 2천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내에 있는 경우에는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전기설비내의 가스사용시설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이하 이 호에서 “검

사대상기”라 한다)를 제외하되 검사대상기기가 포함된 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검사대상기기의 월사용량을 포함한다.

2. 시·도지사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전 및 완공후에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공사에 그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수시검사]**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그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거나 그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5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수시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① 법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45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2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시설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제조소(공급소를 포함한다)·배관 및 정압기를 말한다.

**제47조[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에 1회 이상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을 작성·배포하거나 보도매체를 이용하여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에 1회 이상(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안전점검은 (별표 7)에 의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에 적합여부를 대하여 행한다.

③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6월에 1회 이상 가스누출검사
2.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 확인
3. 그밖에 시·도지사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조치

④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가스공급중지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이 공통된다 하더라도 당해 각호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1.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를 제외한다) 1인 이상을 채용할 것

2.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중 제1종 내지 제4종 시공자의 요건을 갖추고 그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채용할 것

3.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은 자 또는 사용시설점검 특별교육을 받은 자를 수요자 3천인마다 1인 이상을 채용할 것

⑥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규정에는 (별표 13)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또는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 점검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로 하고, 점검자의 수는 수요자 3천인마다 1인 이상으로 한다.

⑧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자의 점검장비는 자기압력기록계 및 배관용공구 그밖에 필요한 기구로 한다.

⑨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의 실시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8조[위해방지조치]**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조치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가스시설의 제반사항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실 운영
2. 비상연락체계의 구축
3. 비상시에 대비한 인원의 편성
4. 비상시의 조치에 대한 작업기준 확립

- 5.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실시기록의 작성
- 6. 긴급복구장비의 확보

**제52조[가스배관매설상황조사]**

① 법 제3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을 하기전에 도로부분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포함한다)의 굴착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배관 매설여부의 조사는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굴착하고자 하는 부분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를 조회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공사시행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2일 이내에 가스배관의 유무에 대한 회답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가스배관유무조회서에 의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답은 (별지 제38호 서식)의 가스배관유무회답서에 의하되 이들에게는 각각 공사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가스안전영향평가의 대상 등]**

영 제9조의 2의 규정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점을 말한다.

- 1.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부분
- 2. 당해 공사에 의하여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직하부에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제55조[협의]**

① 공사시행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

배관매설 상황 조사결과 그 공사구역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법 제30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착공전에 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협의 결과에 관하여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서식의 굴착공사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당해 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별지 제39호 서식(1)
- 2. 제1호의 경우: 별지 제39호 서식(2)

③ 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59조[부식방지협의]**

① 법 제30조의 7 제1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지하매설물”이라 함은 지하에 매설된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 1. 전력선 또는 통신선
- 2. 송유관 또는 열수송관
- 3. 상수도관

② 지하매설물의 관리·운영자는 영 제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부식관련시설 등의 공사에 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긴급히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 제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의 관리·운영자가 전기부식관련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하매설물의 전기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정결과서의 작성요령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